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07도11084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라. 도로교통법위반
피 고 인	곽▒▒ (▒▒▒▒▒▒▒▒▒▒-▒▒▒▒▒▒▒▒▒▒▒▒), ▒▒▒ 주거 강원 ▒▒▒▒ ▒▒▒▒ ▒▒▒▒ ▒▒▒▒ 송달장소 서울 ▒▒▒▒▒▒ ▒▒▒▒ ▒▒▒-▒ ▒▒▒▒▒▒▒▒▒▒ ▒▒▒▒▒▒ 등록기준지 강원 ▒▒▒▒ ▒▒▒▒ ▒▒▒▒ ▒▒▒▒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국선)
원 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2007. 12. 7. 선고 2007노283 판결
판 결 선 고	2008. 2.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차량은 ATV{all-terrain vehicle, 전지형(全地形) 만능차, 주로 레저용으로 사용됨}의 일종인 LT-160(일명 사발이,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으로서 배기량 160㏄의 4륜 차량이고, 그 구조, 장치, 사양 및 용도 등에 비추어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어 2006. 6.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4호, 자동차관리법(2007. 1. 19. 법률 제8254호로 법률명 변경) 제3조 제1항, 구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2006. 4. 26. 부령 제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2륜의 자동차(2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서 파생된 3륜 이상의 자동차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곳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로 도로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의 판시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기록과 관련규정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007. 6. 7.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건설교통부령 제560호)의 개정으로 이륜자동차의 정의가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원동기 냉각방식 등이 이륜의 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자

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는 취지로 변경되면서 ATV차량이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이 보다 분명해지기는 하였지만, 위와 같은 개정 이전에도 ATV차량은 '이륜자동차에서 파생된 3륜 이상의 자동차'로서 이륜자동차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위 시행규칙 개정 이전에는 ATV차량이 이륜자동차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형이 무겁다거나 선처해 달라는 등의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시환 _____

대법관 박일환 _____

주 심 대법관 김능환 _____